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2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년 3월 11일

나. 제안자: 김동협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2.3.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김동협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

2) 보육정책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위원회 참석수당 반영 필요

다. 해당부서: 가족정책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2. 3. 11. ~ 3. 16.)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허은옥)

가. 개정취지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의 정수를 상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0조(구성)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
- 안 제9조(설치)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함
 -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다. 종합의견

-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의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음
- 현재 우리구는 보육전문가, 학부모대표, 보육교사 대표, 어린이집원장,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위탁 심사, 보육계획 수립 등 보육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위원 정수 상향에 따른 위원회 회의수당 예산반영 필요 (현재 13명 X 7회 반영)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1)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현황 1부.
2) 관계법령 1부.

참고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현황

□ 보육정책위원회 현황

- 명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 위원 수: 15명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위원의 구성

연번	구분	구성비(%)	현원(명)	구성원
	합계	100%	15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대표	45% 이상	8	▪ 보호자대표 1명 ▪ 공익대표 7명 - 성폭력상담센터 대표 - 관내 기업 및 주민자치단체 대표 - 세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
2	보육전문가	20% 이하	3	▪ 강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명 ▪ 아동 복지 관련 대학교수 2명
3	관계 공무원	15% 이하	2	▪ 생활복지국장, 가족정책과장
4	어린이집의 원장	10% 이하	1	▪ 몬테소리동화나라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10% 이하	1	▪ 아이큰숲자연학교어린이집 교사

○ 주요기능

-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구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실적

회의개최 횟수		
2019년	2020년	2021년
5회	8회	7회

□ 영유아보육법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12. 11., 2020. 12. 29.>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6. 7.>
-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